

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약

- 연말정산 시기 : 계속근무자 ⇨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(소득세법§134,§135 원천징수시기 특례 포함 신고·납부)
※ 2021.3.10.까지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신청 (반기 납부 신고자도 가능)
-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: 근로·사업·퇴직소득, 종교인소득(3월10일), 그 외 (2월 말일, 2021년은 3월2일)

총급여액 (연간근로소득-비과세소득)

○ 근로소득공제
(한도 2,000만원)

근로소득금액 (총급여액-근로소득공제)

○ 인적공제

○ 연금보험료공제

○ 특별소득공제

○ 그 밖의 소득공제

과세표준
× 기본세율 (6~42%)
= 산출세액

○ 세액감면

○ 세액공제

표준세액공제 (13만원)
특별소득공제 · 특별세액공제 · 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

결정세액

○ 기납부세액

납부 또는 환급세액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	총급여액의 70%
500만원 초과 ~ 1,500만원 이하	350만원 + 500만원초과액의 40%
1,500만원 초과 ~ 4,500만원 이하	750만원 + 1,500만원초과액의 15%
4,500만원 초과 ~ 1억원 이하	1,200만원 + 4,500만원초과액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 + 1억원초과액의 2%

기본공제 (p.110) (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직계존속 : 만 60세 이상(1960.12.31.이전 생) 직계비속·동거입양자 : 만 20세 이하(2000.1.1.이후 생) 형제자매 : 만 20세 이하, 만 60세 이상
추가공제 (p.112) (경로·장애인·부녀자·한부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로우대 공제 : 만 70세 이상(1950.12.31.이전 생)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: 1인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 : 50만원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) 한부모 공제 : 100만원(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우선적용)
연금보험료공제	· 국민·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연금 : 본인 부담액 공제
보험료 (p.121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건강보험료 · 고용보험료 ·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본인 부담액 전액공제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의 40% ③ 주택마련저축납입액의 40% 한도 : ①+② = 300만원 ①+②+③ = 1800만원 · 1500만원 · 500만원 · 300만원 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, ※ 뒷면 참조
주택자금 (p.121) 공제산식 : ①+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자금 : ①+② = 300만원 ①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, ※ 뒷면 참조
개인연금저축 (p.135)	· (2000.12.31.이전 가입) 공제액 : 연간납입금액의 40% (한도 : 72만원)
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(한도 : 500만원·300만원·200만원)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(2016년 이후 가입분)
주택마련저축 (p.13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청약저축 · 주택청약종합저축(年 240만원 이하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(月 15만원 이하) 공제액 : 납입금액의 40%(한도 : 상기 주택자금공제 한도 참조) *총급여 7천만원 이하
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액의 10%를 투자일로부터 2년내 과세기간 선택 공제(한도 : 종합소득금액 50%) 벤처기업 직접투자액 3천만원 이하 100%,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70%, 5천만원 초과 30%
신용카드 (p.145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용카드 공제율 : 일반 15%, 전통시장 · 대중교통 40% 현금영수증 · 직불카드,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사용분 30% * (20년공제율) 3월 사용분 30%~80%, 4~7월 사용분 80% 일괄공제
우리사주조합 출연금	·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(한도 : 400만원, 벤처 1,500만원)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	· 임금삭감액(직전 임금총액-당해 임금총액)의 50%공제 (한도 : 1,000만원)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	·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%공제(한도 : 240만원)
조세조약상 감면 (p.160)	· 원어민교사, 조세조약상 면세요건 충족 시 면세 혜택
중소기업취업자 감면 (p.161) (청년 90%, 청년 외 7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를 취업일로부터 3년 · 5년, 150만원 한도 대상 : 청년(만 15세~34세), 청년 외(60세 이상자, 장애인, 동종업종 재취업 경력단절여성)
기타세액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가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 소득세 감면 ·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·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·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
근로소득세액공제 (p.172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%, 130만원 초과 분 30%공제 한도:총급여액 3천3백이하(74만원), 7천만원 이하(66만원), 7천만원 초과(50만원)
자녀세액공제 (p.173) (손자녀 적용불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 1명(15만원), 자녀 2명(30만원), 자녀 3명 이상 : 30만원+2명 초과 1인당 30만원 출생·입양 세액공제 :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이상 70만원 * 자녀세액공제 대상 : 7세 이상의 자녀(미취학 아동 요건 삭제)
연금계좌 (p.174) (공제율 12%~15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금저축계좌 납입액(한도 400만원)* · 퇴직연금계좌 납입액(한도: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) * 50세 ↑ 한도확대:연금저축계좌 400~600만원,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포함 700~900만원
보험료(공제율 12%~15%) (p.179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장성보험료(저축성 제외) 12%(한도 100만원), ·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5%(한도 100만원)
의료비 (p.181) 산식 : (㉠+㉡) × 15 · 2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본인·65세 이상자·장애인·난민시술비(20%),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② ①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지출액 - 총급여액 × 3%(한도 700만원) * 단 ①의 금액 < 총급여액 × 3%인 경우 그 미달금액을 ②에서 차감 후 15%·20% 적용 * 산후조리원비용 :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(총급여 7천만원 이하)
교육비(공제율 15%) (p.186) (학자금대출상환액포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:전액(대학원 포함) · 대학생 : 1명당 900만원한도(대학원제외)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1명당 300만원한도(체협합승비 30만원까지 포함) 장애인재활교육 목적사회복지시설등에지급하는특수교육비(직계존속포함)
기부금 (p.195) (공제율 100/110·15·25·30%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치자금기부금 : 10만원 이하(100/110), 10만원 초과 15%(3천만원 초과 25%) 법정·지정기부금·우리사주조합기부금 : 15%(1천만원 초과 30%) 한도 : 법정·정치자금(전액), 우리사주조합 : 근로소득·정치·법정 × 30% 지정종교외(㉠ × 30%), 종교(㉠ × 10% + MIN(㉠ × 20%, 종교외단체 기부액)) * ㉠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
월세액(공제율 10~12%) (p.20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)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소지 주택 등을 임차하여 지급한 월세의 10%공제(한도 75만원) 총급여액 5천5백만원이하(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)는 12% 적용
납세조합공제	·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5% 공제
외국납부세액 (p.211)	· 한도 : 근로소득 산출세액 × (국외근로소득금액 / 근로소득금액)

※ 본 자료는 세법 상 공제 항목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및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